

2) 청원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, 제45조)

종 류	유학휴직	고용휴직	육아휴직 / 입양휴직	불임·난임휴직
근거	제5호	제6호	제7호 / 7호의2	제7호의3
요건	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	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육아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• (입양) 만 19세 미만의 아동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육아휴직대상 제외)을 입양할 때 	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
기간	3년 이내 (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)	고용기간(단, 비영리법인에 고용 시 3년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육아)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 • (입양) 6월 이내 	1년 이내(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)
승진평정 경력기간	• 경력평정: 50% 산입	• 경력평정: 산입 ※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각 50% 산입	• 경력평정: 산입	• 경력평정: 미산입
승급	• 승급인정	• 승급인정 ※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각 50% 산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육아) 승급일부인정: 첫째·둘째 1년 이내 기간, 셋째이후 휴직 전 기간(3년) • (입양) 휴직 전기간 인정 	• 승급제한
결원보충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
보수	봉급 50% 지급	지급안함	지급안함	휴직기간 1년 이하: 봉급액의 70%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: 봉급액의 50%
수당	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	지급안함	※ 표 하단 별도 안내	정근수당 등 일부 감액 지급
기타	경기도교원국외자비 유학, 연수·연구대상자 선정기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교원육아휴직처리기준 •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	

※ 육아휴직수당: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 3 참고
(자세한 사항은 육아휴직 안내 p.218 참고)